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생활 보호 대상자 개요

발행 2011 년 4 월 29 일

소개

생활보호 대상자는 입국 불허 및 추방에 대한 근거로 100 년이 넘게 미국 이민법의 일부였습니다. 언제든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입국 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생활보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요는 비시민권자가 특정 공공 혜택을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경

이민 및 국적법(INA) 조항 212(a)(4)에 의해, 미국에 입국하려거나 영주권자 신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영주권 취득) 개인은, 그 사람이 "입국 또는 신분 조정 신청시에 언제든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미국 입국 또는 신분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및 복지법은 비시민권자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해 불리한 이민 결과에 직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비시민권자와 그 가족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판명되지 않고, 재난 구조, 전염병 치료, 예방 접종, 아동의 영양 및 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보조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정의

입국 불허를 결정하는데, USCIS 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소득 유지를 위한 정부 현금 보조나, 정부 지출의 장기 치료 요양 시설에 대한 수혜 중 하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주로 생계를 위해 정부에 의존하는"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근거로 한

강제 추방 및 입국 불허에 관한 현장 지침", 64 FR 28689 (1999 년 5 월 26 일) 참조.
외국인이 생활보호 대상자 입국 불허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령, 건강, 가족 상태, 자산, 자원, 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을 포함하여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재정 지원 진술서가 요구될 경우, 그 진술서의 결여 이외의 한 가지 요소만으로 그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보호자 고려 대상 혜택

USCIS 지침에는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보조에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현금 보조 (TANF) 프로그램과 종종 "일반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주 또는 지방정부 현금 보조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부 현금 보조를 받는 것은 기타 모든 기준이 충족될 경우 비시민권자를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입국을 불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 대한 수혜 만으로는 자동적으로 개인을 입국하지 못하게 하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신분을 조정할 수 없게 하거나, 생활보호 대상자를 근거로 강제 추방 할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근거로 한 강제 추방 및 입국 불허에 관한 현장 지침" 64 FR 28689 (1999 년 5 월 26 일) 참조. 각 결정은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케이스별로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영양원이나 정신 병원과 같이 장기 치료를 위한 영양 기관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공공 보조 역시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을 위한 목적에 상황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재활을 위해 단기간 시설에 입원하는 것은 생활보호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보호자 비고려 대상 혜택

기관 지침에 따라, 비현금 혜택 및 소득 유지 목적이 아닌 특수 목적 현금 혜택은 생활보호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치료 영양원에 대한 지원이 아닌 메디케이드 및 기타 건강 보험 및 의료 서비스 (예방 접종 및 전염병 증상의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공공 혜택, 보건 진료소 사용, 단기 재활 서비스, 산전 관리 및 긴급 의료 서비스를 포함)
-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CHIP)
- 영양 보충 보조 프로그램 (SNAP)을 포함한 영양 프로그램 - 일반적으로 푸드 스탬프, 여성, 유아 및 아동(WIC) 영양 보충 프로그램, 전국 학교 점심 및 조식 프로그램, 및 기타 보충 및 긴급 식품 보조 프로그램으로 언급됨.
- 주택 혜택
- 아동 보육 서비스
- 저소득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LIHEAP)과 같은 에너지 지원

- 긴급 재난 구호
- 위탁 양육 및 입양 지원
- **Head Start** 법에 따른 혜택 및 초, 중, 고등 교육 지원을 포함한 교육 보조 (공립 학교에 다니는 것 따위)
- 직업 훈련 프로그램
- 현물 지급,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보조 (수프 주방, 위기 상담 및 개입, 그리고 단기 보호소 등)
- 아동 보육 보조금이나 교통 보조금과 같은 **TANF** 에 따른 비현금 혜택
- 타이틀 II 사회 보장 연금, 정부 연금 및 퇴직 연금과 같은 적립된 현금 지불액
- 실업 수당

상기 프로그램 중 일부는 **TANF** 또는 아동보육 및 발달 총괄교부금(**CCDBG**)에 따라 제공되는 에너지 지원, 교통 또는 육아 혜택 및 **TANF** 에 따른 일회성 긴급 지불과 같은 현금 혜택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목적은 소득 유지를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현금 지원의 필요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생활보호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 일반적으로,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수혜 자격이 있는 어떠한 공공 혜택이든 합법적으로 받는것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면책 조항 :이 문서는 [USCIS](https://uscis.gov) 웹사이트에 있는 영어 버전을 기반으로 번역되었습니다.